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
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



2025년 12월 9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60 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전환근로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
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일자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 제7항의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자에게도 적용한다. 이 경우,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일휴가를 부여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특별휴가)</p> <p>①~⑥ (생 략)</p> <p>⑦ <신 설></p>	<p>제32조(특별휴가)</p> <p>①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전환근로자는 본인의</u></p> <p><u>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</u></p> <p><u>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</u></p> <p><u>있다.</u></p>

□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제23조(특별휴가)

⑮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3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